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공 무 원 의 노 동 조 합 설 립 및 운 영
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재갑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7860호, 2021.1.5. 공포, 2021.7.6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(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981